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3. 5.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년 3월 23일, 유경준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2년 3월 2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22.9.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소위원회부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3.5.22.) 상정, 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3.5.24.) 상정, 소위심사보고, 대체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유경준의원)

현행법은 재산등록의무자인 공직자가 등록하여야 할 재산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은 포함하지 않음.

그러나 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가상자산이 등록대상재산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재산등록의무자가 재산을 축소하여 신고하거나 부당하게 재산을 증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따라서 공직자의 재산 등록 항목에도 가상자산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직자의 등록 대상 재산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추가함으로써 등록재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4조제2항제6호 신설 및 제6조의4제2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박규찬 전문위원)

현행법은 재산등록의무자가 등록하여야 하는 등록재산을 부동산의 소유권·지상권·전세권, 1천만원 이상의 현금·예금·주식·채권, 500만원 이상의 금 등으로 규정¹⁾하고 있는데,

1) 「공직자윤리법」 제4조(등록대상재산)

②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2.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3. 다음 각 목의 동산·증권·채권·채무 및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
 - 가.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수표를 포함한다)
 - 나.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예금
 - 다.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주식·국채·공채·회사채 등 증권
 - 라.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채권
 - 마.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채무
 - 바.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을 포함한다)
 - 사.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 아.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골동품 및 예술품
 - 자.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 차.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 카.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개정안은 그 등록재산의 대상에 비트코인²⁾·이더리움³⁾ 등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상의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가상자산(virtual asset)은 가상화폐(virtual currency), 암호화폐(crypto currency) 등 다양한 용어⁴⁾로 불리우는데, 대법원 판례에서도 가상자산의 일종인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보고 있고⁵⁾,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함)에서 가상자산⁶⁾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

4. 합병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5. 주식매수선택권

2) 2009년 1월 3일 최초 발행된 암호화폐로, 가장 거래규모가 큼.

3) 2015년 7월 Vitalik Buterin이 개발한 암호화폐임.

4) 암호자산은 블록체인(Block-chain, 분산원장)과 암호화 기술에 기반을 둔 자산을 뜻하며, 가상자산은 실물의 발행 없이 가상으로 존재하는 자산을 뜻한다는 점에서 가상자산은 암호자산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음. 참고로, 블록체인은 거래정보를 기록한 원장을 특정 기관의 중앙 서버가 아닌 P2P(Peer to Peer) 네트워크에 분산하여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데이터 분산처리 기술을 뜻함(입법조사처, 「일본의 가상자산(Virtual Assets) 이용자 보호 규율 강화」,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제38호, 2020.4.29.

5) 피고인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 방조죄에 의하여 취득한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비트코인은 경제적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가상화폐’의 일종이다. ② 피고인은 음란물유포 인터넷사이트인 “OOOOOOO.com”(이하 ‘이 사건 음란사이트’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사진과 영상을 이용하는 이용자 및 이 사건 음란사이트에 광고를 원하는 광고주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대가로 지급받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취급하였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현금, 예금, 주식, 채권 등과 같은 재산의 유형에 포함되어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 파악 등을 통한 정책 및 공직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가상자산으로의 재산 은닉⁷⁾ 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입법의 타당성이 있음.

다만, 현행법은 현금·예금·주식·채권 등 자산의 경우 1천만원 이상의 자산을 대상으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지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가상자산의 경우 일반적인 금융자산과 달리 자산의 증감여부의 파악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가상자산의 가액산정방법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유사 입법례⁸⁾를 참조하여 해당 조항⁹⁾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사.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비트코인’으로 재산 은닉…탈세자 2천4백명 강제징수, KBS뉴스, 2021.3.15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생략)

②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거래 규모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1.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2. 1호 외의 가상자산: …가상자산 사업자 및 그에 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

9) 「공직자윤리법」 제4조(등록대상자산)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재산의 종류별 가액(價額)의 산정방법 또는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또는 실거래가격
2.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공시가격 또는

한편, 인사혁신처는 공직자 재산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다른 자산처럼 가상자산도 등록기준 하한금액 설정이 필요하며, 가상자산의 신고내역 확인을 위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¹⁰⁾’를 현행법상 금융정보 회신기관(제6조의5¹¹⁾)으로 포

실거래가격

3. 상가·빌딩·오피스텔, 그 밖의 부동산은 대지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산정한 가액과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 중 최고가액(취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함께 쓴다)으로 산정한 가액의 합계액 또는 실거래가격
 4.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는 실거래가격이나 전문가 등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수량·내용 등 명세
 5. 현금·예금·채권 및 채무는 해당 금액
 6. 국채·공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은 액면가
 7. 주식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에 상장된 주권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은 재산등록 기준일의 최종거래가격(거래가 재산등록 기준일 전에 마감된 경우에는 마감일의 최종거래가격.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을 말한다), 그 외의 주식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또는 실거래가격
 8.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은 출자가액과 지분비율 및 최근 사업연도의 회사 연간매출액
 9.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을 포함한다)은 실거래가격이나 신고일 현재의 시장가격 그리고 종류·함량과 중량
 10. 보석류는 실거래가격이나 전문가 등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크기·색상 등 명세
 11. 골동품 및 예술품은 실거래가격이나 작가·크기를 고려한 전문가 등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크기·작가 및 제작연대 등 작품의 명세
 12. 회원권은 취득가액. 다만, 골프회원권은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또는 실거래가격
 13.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는 실거래가격이나 감가상각 등을 고려한 전문가 등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제작연도·제작회사·등록번호 등 명세
 14. 주식매수선택권은 받을 주식의 종류 및 수량, 행사가격·행사기간 등 행사조건, 받을 주식의 현재시가 등 명세
- 10)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정의)
 하.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1)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2)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이하 생략)
- 11)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5(금융거래정보·부동산정보의 제공 및 활용 등)

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교홍)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대안반영폐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
-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록·신고”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등록의무자가 요청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신용정보 중 대출 잔액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2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생략)